

-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 간의 -  
**문화콘텐츠 사업협력 업무협약서**

(재)서울디자인재단(DDP)과 (재)중구문화재단(충무아트홀)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디자인문화 확산에 있어, 양 기관 간 사업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콘텐츠와 시설 및 정보 등 대외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 한다.

### **제1조(목적)**

이 협약은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 간의 사업협력 및 교류 등 대외 협력을 통해 문화동반자로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양 기관 간의 창조산업을 발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상호 발전하기 위해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에 합의한다.

### **제2조(기본원칙)**

양 기관은 문화콘텐츠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한다.

### **제3조(협약내용)**

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1.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은 상호 협력하여 문화 콘텐츠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발전시키며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한다.

2.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은 상대방의 사업 및 기타 프로젝트를 위해 콘텐츠 제공과 시설 지원 등 양 기관 사업운영에 서로 협력한다.

3.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은 양 기관의 브랜드와 사업 및 기타 프로젝트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.

4.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은 양 기관의 직원복지를 위해 공연, 전시 및 행사에 할인 또는 지원 등 상호 협력한다.
5.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협력한다.

#### 제4조(협약기간)

이 협약서는 상호 체결 후 2년까지 유효하며, 그 이후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할 수 있다.

#### 제5조(협약내용의 변경)

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6조(협약내용의 준수)

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며,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6월 3일

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283

(재)서울디자인재단

대표이사 이준


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

(재)중구문화재단

사장 이종덕